

風災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취재/최 태 원 <홍보부 대리>

서울 구로구 시흥동 1002번지에 소재한 9개동 986세대의 럭키 남서울아파트가 바로 그곳.

주위의 지면보다 어림잡아 15미터 정도는 높은 위치에 자리한 것 같다.

단지내의 각종 시설물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데다가 이곳에서는 주위의 모든 곳을 내려다 볼 수 있어서인지 우선 시야가 후련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아파트는 1982년에 완공되어 만 3년여가 지나는데 동안 주변의 생활시설과 상호 조화적 균형을 이루며 자체 관리조직을 체계화해 놓음으로써 이제는 여타의 생활권으로부터 모범적 주거환경을 갖춘 주거단지로 인정받는 아파트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 풍재상황과 보험

85년 8월 14일에 불어닥친 태풍 “리”호는 우리나라 곳곳에 많은 피해를 안겨 주었다.

그때 태풍의 강도가 워낙 세었던 탓으로 이곳 럭키아파트에도 전세대의 약 20% 정도에 달하는 세대에서 베란다의 유리가 깨어지고 가옥 내부의 기물이 파손되는 등 강풍의 위력이 미쳤었다.

화재가 아닌 풍수재에 의한 재해도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중 본협회 직원이 찾아가 그 사실을 알려주어 보험금을 타게 해줌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에 대한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갖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던 보상 사례가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다만 자연에 의한 재해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하여 그저 안타까울뿐 입은 피해를 모두 감수할 도리밖에 없는 것으로만 결론지을 수 밖에 없었다.

한편 태풍이 지나간 후 담당구역내의 재해상황에 대하여 줄곧

관심을 쏟고 있었던 본협회의 동 지역 담당직원은 이 사실을 알고난 즉시 현장의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물론 관리사무소 직원들까지도 화재보험에 가입해 놓은 것만으로 풍수재에 의한 피해보상까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하기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7대 도시의 특수건물에 대하여 풍수재로 인한 재해보상제도가 시행된 것은 1983년부터였고 그 이전까지는 특약을 맺어야만 비로소 보상이 가능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특히 서울의 경우 이러한 사고가 별로 없었던데다가 대부분 풍수재의 보상을 위한 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인식이 덜 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면서도 책임을 맡고 있음으

로써 느껴야만 했던 당시의 고층에 대하여 이 아파트의 천 홍식 관리소장은 『이번 재해가 비록 천재라고는 하나 아파트 시설물이 손괴된데 대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들었지만, 또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하고 나름대로 해결방법을 생각하느라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라면서 『모르고 있던 일을 담당직원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가 많았던 공유시설물인 옥상의 벤틸레이터 부분까지 피해보상을 해주셔서 원상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 일이 있고난 후 이곳 전주민들은 화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당시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세대는 물론 이미 가입되어 있던 세대를 통틀어 한날자에 일시가입할 것을 추진, 작년 12월 30일자로 전세대에 대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천재이건 인재이건간에 재해란 인간과 더불어 상존하게 마련이며 이러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제도는 인간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 일을 추진했던 입주자 대표회의의 서 보수 회장은 『주민들 대부분이 화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입주자 가운데 소유주가 아닌 세대, 즉 일부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가구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보험료가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험료가 조금 더 들더라도 동산보험까지 들어 놓았더라면 가옥 내부의 동산 피해부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그렇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라고 소감을 피력하면서, 한국

화재보험협회는 이러한 문제에 유의하여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동산의 피해가 따르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1개 보험종목에 동산부분까지 포함되는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아울러 강조했다.

또한 관리실 관계자들은 그밖에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얻은 것이 있다면 우선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아파트에 관한 일이라면 전보다 훨씬 협조가 잘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의 방재의식 고취를 위해서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음을 부연하면서 방재의식의 저변확대는 반복적인 교육과 홍보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관리실에 홍보물 등을 제공, 지원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피보험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이들의 의견 하나하나에 대하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천재이건 인재이건간에 재해란 인간과 더불어 상존하게 마련이며 이러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제도는 인간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철저한 예방조치와 함께 사후의 대비책도 강구해 놓아야만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번 재해처리 결과의 성과였다면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